

압류물건 보관장소 이전신고

사 건 2000 본000호 채 권 자 000 채 무 자 ◇>>>

위 당사자 사이의 유체동산강제집행사건에 관하여 압류물건 보관인인 채무자는 이 사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주거를 옮기게 되었습니다. 그러므로 압류물건을 옮긴 주소지에서 보관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 래

1. 이전연월일 : 20○○. ○. ○.

1. 현주소지 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1. 이전장소 :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-ㅇㅇ

2000. 0. 0.

위 채권자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집행관 귀중

				고등조작단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 기보
제출법원	집행법원	관 런 법 규	민사집행법 제189조제1항	www.klac.
제출부수	신고서 2부	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